##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754 발의연월일: 2025. 1. 23.

발 의 자:이강일·김남근·김남희

김문수 · 김우영 · 김현정

민병덕 • 박상혁 • 박정현

백혜련 • 염태영 • 이용우

정성호 · 정준호 · 허성무

허 영·황명선·황운하

의원(18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도록 하는 복종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복종의 의무 위반을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위법한 명령에 대하여는 따라야 할 의무가 없다고 대법원이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내용이 현행법 하에 별도 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입법의 미비가 있는 실정임.

또한 위법한 명령에도 불복하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공무원이 범죄자로 전락하거나, 명령 불이행시 불이익 등에 대한 우려로 헌법에 위배되거나 위법한 상관의 명령을 이행하는 사례에 대하여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무원이 상관의 명령이 명백히 위법한 경우 이의를 제기하거 나 거부할 수 있도록 하며, 이로 인하여 어떠한 인사상 불이익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임(안 제57조 단서 신설). 법률 제 호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상관의 명령이 명백히 위법한 경우 이의를 제기하거나 거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어떠한 인사상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7조(복종의 의무) 공무원은 직	제57조(복종의 의무)
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	
다. <u>&lt;단서 신설&gt;</u>	<u>다만, 상관의 명령이 명백</u>
	히 위법한 경우 이의를 제기하
	거나 거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어떠한 인사상 불이익
	도 받지 아니한다.